

의안번호	2211796
의 퇴 인	김재섭 의원
회 답 일	2025.9.3.
추계번호	25C40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8조 (자립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폐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6.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신설)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8조 (자립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폐소 이후의 자립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구조법」 제7조¹⁾제2항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해당 보호대상아동에게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²⁾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보호종료 이전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음
- 또한,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³⁾하고 있으나,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시 발생하는 송달료 및 인지 등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등이 포함되는 데,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대상아동 중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및 사건의 수, 각종 비용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

-
- 1) 「법률구조법」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법무부 소관 「법률구조」 사업 내 “법률구조활동비”(2025년 예산 257억 4,200만원)를 통하여 보호대상아동,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사기피해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음
- 3)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